

주류의 알코올분 도수(제3조제2항 관련)

1.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

가. 법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95도 이상이어야 한다.

다만, 법 별표 제3호가목3)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는 85도 이상 90도 이하여야 한다.

나.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.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. 다만, 다음의 주류는 추가로 0.5도까지 증가를 허용한다.

1) 살균하지 않은 탁주·약주

2)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

3)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로서 제7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를 포함한다)

2. 주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

주류 종류	알코올분 도수
가. 법 별표 제2호나목4)	알코올분 25도 미만
나. 법 별표 제2호다목2)	
다. 법 별표 제2호라목3)	
라. 법 별표 제2호마목5)	

3. 제1호의 예외사항
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,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,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·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호와 다른 규격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.